

송영천 판사가 대법원에 파기되지 않고 계류중인 사건을 판결했다.

저희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에 소재하는 재건축아파트인 대치도곡 2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며 미동의자입니다. 저희는 1억2천5백만원이라는 비용분담금 부담에 동의할 수 없어 조합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1억2천5백만원의 비용분담액을 삭제한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였지만 수차례나 모두반려되었고, 본의 아니게 이후 매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치2도곡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소송에 있어서 이미 두 차례나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03.7.4 선고, 2001가합57551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4.7.22 선고, 2003나52496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에 불복2004년 8월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04다 44537, 44544, 44551)를 제기하는 한편, 동일한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1심 지방법원(서울 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04가합70500, 송영천 판사)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동일한 자료에 대해 이미한차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단조차 기다리지 않고2005년 3월 18일 재건축보완결의는 유효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재건축보완결의가 가능하려면 재건축결의가 무효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런데 송영천 판사가 유효로 판결한 재건축보완결의는현재대법원에 파기되지 않고 계류중인 소송(제1차 재건축결의)이 무효로 판결나게되면 덩달아 무효로 판결이 나게될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이전에는해서는 안될 재판을 송영천 판사가한 것입니다. 송영천 판사의 판결로 인해 조합은무효가 된 제1재건축결의 상의 근거없는 부담금 1억 2천 5백만원을 다시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보완결의 상의 근거없는 추가사업경비 289억원은 1인당 5천5백여만원의 추가분담금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조합은 주민들을속여 1인당 1억 8천 여만원 (평형별 분담금제외한 금액)을 더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지금까지의 조합과 시공사의 행태로 볼 때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송영천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조합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제동을 걸지 않고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의 이익보다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집행부측의 이익을대변하는 것입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송영천 판사는 자진 사퇴하라.

지방법원 민사42부와 고등법원 민사22부가 대법원에 파기되지 않고 계류중인 사건을 다시심리라고 판결 할 수 있는가? 민사 22부 부장판사 송영천과 민사 22부 부장판사 한위수에게 누가 대법원의 권한을 주었나? 판사가 조합과 시공사(현대산업개발)와 재건축이권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과연 이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송연천 판사와 한위수 판사는 책임지고 사퇴하라